

2017. 4

2018학년도 전기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

## 차 례

---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3
2. 전형일정 .....	4
3.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	4
4. 전형방법 .....	8
5. 총원합격자(재외국민) 발표 .....	9
6. 지원자 유의사항 .....	9
7. 서류제출 .....	10
8.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 및 유의사항 .....	14
– (서식1) 인천대학교 입학원서	
– (서식2) 종합기록표	
– (서식3) 학력조회동의서	



## 1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재외국민	12년전과정	북한이탈주민
인문대학	국어	1		
	영어	1		
	독어	1		
	불어	1		
	일어	1		
	중어	1		
자연과학 대학	수학	1		
	물리학	1		
	화학	1		
	소비자·아동학과	1		
	패션산업학과	1		
	해양학과	1		
사회과학 대학	사회복지학과	1		
	신문방송학과	1		
	문화행정보건학과	1		
	창의인재개발학과	1		
	법학	1		
	행정학	1		
글로벌법정경 대학	정치외교학과	1		
	경제학과	1		
	무역학부	2		
	기계공학과	2		
	메카트로닉스공학과	1		
	전자공학과	1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2		
	안전공학과	1		
	신소재공학과	1		
	에너지화학공학과	1		
	컴퓨터공학부	2		
	정보통신공학과	2		
정보기술대학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1		
	경영학부	2		
경영대학	세무회계학과	1		
	도시행정학과	1		
도시과학대학	건설환경공학부	2		
	도시공학과	1		
	도시건축학부	2		
	도시건축공학전공			
생명과학 기술대학	생명과학부	1		
	생명공학부	1		
	나노바이오전공			
합계		48	적정인원	

※ 단, 학과의 소속 단과대학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

※ 학부 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전공은 입학 후 학부에서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 2

###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및 유의사항
재외국민 12년 전 과정, 북한이탈주민	원서접수	<p>2017. 07. 01(토) ~ 07. 07(금) 17:00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접수(<a href="http://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a>)만 가능</li> <li>○ 전형료 : 60,000원 ※ 접수수수료는 본교에서 부담</li> </ul>
	입학원서 및 수험표 출력	<p>인터넷 원서접수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원서접수 완료 후 - 수험표 출력(※면접고사 당일 필히 지참)</li> </ul>
	서류접수	<p>2017. 09. 11(월) ~ 09. 14(목) 17:00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입학관리팀)</li> </ul>
	면접고사	<p>2017. 10. 21(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사실은 2017. 10. 18(수)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li> <li>○ 수험표와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지참</li> <li>○ 수험표 분실자는 입학관리팀에서 재교부</li> </ul>
	합격자발표	<p>2017. 11. 04(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교 홈페이지(<a href="http://www.inu.ac.kr">http://www.inu.ac.kr</a>)</li> </ul>
	등록예치금 납부	<p>2017. 12. 18(월) ~ 12. 20(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교 지정은행 ※등록(예치)금 납부</li> <li>○ 등록기간 내 미등록자는 불합격 처리함</li> </ul>
	총원 합격자발표 (예정)	<p>2017. 12. 20(수) ~ 세부일정 추후공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기간 : 추후공고</li> </ul>
	최종등록금 납부	<p>2018. 01. 31(수) ~ 02. 02(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교 지정은행에 등록금 납부</li> </ul>

## 3

###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 1 공통 지원자격

초 · 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아래 ① 또는 ②항에 해당하고 <지원구분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①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②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 고교로 전학하여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 대학입학 허용기간(재외국민) : 고교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 초)부터 2년 6개월 이내(재수까지 지원 가능). 단, 군복무 기간은 제외됨

※ 국내 · 외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외국소재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한 자만 해당됨



## 2. 지원구분별 지원자격

지원구분		지원자격
재외국민	영주교포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로서 아래 ①~③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아래 ①~③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아래 ①~③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 ①~③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아래 ①~③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에 2년 연속 재학한 경우. ②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2년 연속 재학한 경우. ③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고교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연속 재학한 것으로 간주함.	
전 교육과정 이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포함).</li> <li>외국인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자 또는 인천대학교 한국어학당 4급 과정 이상 수료자 및 2018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는 인천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합격자.</li> </ul>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3. 지원 자격기준 범위

구 분	자격기준 범위	비 고
영주교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특례입학자격 인정 기준시점(2018. 2. 28)까지 해당국에서 취득한 영주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함</li></ul>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li></ul>	
상사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li><li>•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li><li>•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 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용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li><li>•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li><li>• 정부 파견 의사, 언론기관 특파원</li></ul>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한 (교육·연수·출장 등 단기근무자 제외)
외국정부·국제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외국정부 :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li><li>• 국제기구 : 정부 간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li></ul>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li></ul>	
전 교육과정 이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가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li></ul>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li></ul>	



#### 4. 심사기준

##### 가. 해외재학, 근무, 거주(영주), 체류기간 기준

지 원 구 分	재 학 형 태	최저 인정기간							
		학 生			보호자(父)			배우자(母)	
		재학	거주 (영주)	체류	근무	거주 (영주)	체류	거주 (영주)	체류
영주교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에서 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한 경우</li> <li>외국에서 고교 과정 1년 포함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한 경우</li> </ul>	2년	2년	2년	-	2년	1년	2년	1년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2년	2년	2년	2년	2년	1년	-	-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2년	2년	2년	2년	2년	1년	-	-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2년	2년	2년	2년	2년	1년	-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2년	2년	2년	2년	2년	1년	-	-
영주교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에서 고교 과정 1년 포함 중·고교 과정을 비연속으로 통산 3년 이상 재학한 경우</li> </ul>	3년	3년	3년	-	3년	1년 6개월	3년	1년 6개월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3년	3년	3년	3년	3년	1년 6개월	-	-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3년	3년	3년	3년	3년	1년 6개월	-	-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3년	3년	3년	3년	3년	1년 6개월	-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3년	3년	3년	3년	3년	1년 6개월	-	-

※ 보호자와 배우자의 개념은 상대적임. 만일, 부모 중 모(母)가 공무원으로 해외에서 근무한 경우 또는 부(父)가 사망한 후 모(母)가 기타 재외국민으로 자녀를 동반하여 해외로 나간 경우 등은 모두 모(母)가 보호자가 됨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외국소재 학교에서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한 경우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경우

##### 나. 해외 영주·근무·체류기간 산정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해외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 기재된 기간
해외체류기간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기준)
해외영주기간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해외근무기간	증명서(재학 및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다. 재학기간 인정기준

- 1)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재학기간 1년으로 인정한다.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 단,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재학한 것으로 간주.
- 2)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해석한다.  
(예 : 중고과정 연속 3년 이상 →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 3) 학생의 지원자격이 되는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한다.
- 4) 외국고등학교의 경우 고교 졸업학년인 3학년은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제에 준하여 해당국 학제의 12학년(영국학제는 13학년)을 의미하며, 각 해당국별 학제 및 학기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5) 졸업(예정)자의 재학기간은 2018. 2. 28일까지 인정한다.  
단,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 6)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 . 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기간의 학제차이로 총 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 6) 조기졸업, 월반, 중복학기 및 외국의 학제 차이 등 기타 사항에 대한 인정여부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라. 외국학교 인정기준

- 1)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정규학교이어야 한다.(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2) 원칙적으로 부모의 거주(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한다. 다만, 부모 거주(근무)국의 지역·종교·체제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부모의 거주(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제3국 수학인정서를 지원자가 작성하며 증빙자료(재외공관장 확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3) 유아(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인정하지 않는다.

#### 마. 기타 사항에 대한 인정여부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

4

#### 전형방법

#####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면접평가 100%

##### 2. 면접요소 및 평가내용

구 분	면 접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재외국민</li><li>• 전 교육과정 이수자</li><li>• 북한이탈주민</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면접요소 : 계열별 수학에 필요한 전공에 대한 이해도, 인성, 표현력을 평가하는 구술면접</li><li>◎ 평가등급 : 5등급(A-100점, B-90점, C-80점, D-70점, E-60점)</li></ul> <p>※ 면접요소에 의한 기본 한국어 구사능력 및 일반 구술면접</p>



### 3. 사정(선발)방법

구 분	선 발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국민</li> <li>• 북한이탈주민</li> <li>• 전 교육과정 이수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과(부)별 성적 총점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 발생 시 아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함</li> <li>◎ 수학능력 부적격자로 판정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li> <li>※ 수학능력 부적격 판정기준 : 평가항목 중 'E'등급이 2항목 이상인 자</li> <li>※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며 <b>면접고사 성적이 'E'등급이 2항목 이상인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b></li> </ul>

- ※ 지원자격 미달자, 서류 미제출(미비)자, 면접고사 결시자 및 신분증 미 확인자는 사정대상에서 제외함
- ※ 미등록 또는 등록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 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선발함(재외국민전형 지원자)
-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입생 선발 사정원칙에 따라 처리함

#### 《 동점자 처리기준 》

- ① 면접고사 점수(총점, 전공에 대한 이해도, 인성, 표현력) ② 연소자 순

### 4. 전 교육과정 이수자(외국인) 졸업요건

- 입학 후, 졸업 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5

### 충원합격자 발표

1. 최초합격자 발표 시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의 200%를 예비순위자로 사전 공고한다.  
(홈페이지 <http://www.inu.ac.kr>)
  2. 충원합격자 발표 : 2017. 12. 20(수) ~ 12. 27(수) 21:00  
⇒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는 없다.
- ※ 예비 순위자는 충원합격자 발표 기한까지 합격자명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합격자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6

### 지원자 유의사항

1. 원서 및 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내에 본인이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대리인 및 우편발송 제출 시 지원자의 학력사항 및 해외거주, 체류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하여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2.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국내·외 전적학교에 학적 및 거주사실 등의 조회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한다.



3. 학력조회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학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 후에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4. 전형결과 본 대학에서 수학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5. 면접고사 당일에는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6. 수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입학할 학기가 같은 다른 대학에 이중등록할 수 없으며,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다.
7. 2018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지원 가능 횟수를 최대 6회로 제한 한다.

※ 전국대학교 수시모집에 속한 모든 전형이 지원횟수의 계수대상이며, 위반 시 입학 무효됨.  
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순수외국인 전형 지원자는 해당사항 없음.

8. 원서 상에 연락처(주소와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연락 두절로 인하여 각종 통지가 불가능하게 되어 합격이 취소된 경우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입학시험 성적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10. 시험 당일 각종 무선통신기기(휴대전화 등) 및 전자사전 일체를 소지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사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1. 이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교의 신입생 선발원칙 및 우리대학교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7 서류제출

1. 제출기간 : 2017. 9. 11(월) ~ 9. 14(목) 17:00까지

2. 제출장소

- 방 문 : 인천대학교 입학관리과(본관 1층)
- 우편제출 : (우)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입학관리과(본관 1층)

3.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재외국민, 12년 전교육과정, 북한이탈주민 자격의 신청자는 전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제출서류 발송용 봉투 라벨(주소)을 출력 후 서류봉투에 부착하여 제출」



#### 4.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지원구분	제 출 서 류
영주교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서, 종합기록표 각 1부(서류접수 시 원서를 출력하여 제출)</li> <li>2) 학력조회동의서 1부(졸업한 고등학교가 외국 소재인 경우만 작성)</li> <li>3)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li> <li>4)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각 1부</li> <li>5) 주민등록증명서 1부(호(제)적등본)</li> <li>6) 출입국사실 증명서 각 1부(보호자, 학생)</li> <li>7)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각 1부(보호자, 학생)</li> <li>8) 영주권 사본 각 1부(보호자, 학생)</li> </ul>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서 종합기록표 각 1부(서류접수 시 원서를 출력하여 제출)</li> <li>2) 학력조회동의서 1부(졸업한 고등학교가 외국 소재인 경우만 작성)</li> <li>3)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li> <li>4)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각 1부</li> <li>5) 가족관계증명서 1부(호(제)적등본)</li> <li>6) 출입국 사실증명서 각 1부(보호자, 학생)</li> <li>7)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li> <li>8)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각 1부(보호자, 학생)</li> <li>9) 제3국 수학인정서 1부(해당자만 제출)</li> </ul>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서 종합기록표 각 1부(서류접수 시 원서를 출력하여 제출)</li> <li>2) 학력조회동의서 1부(졸업한 고등학교가 외국 소재인 경우만 작성)</li> <li>3)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li> <li>4)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각 1부</li> <li>5) 가족관계증명서 1부(호(제)적등본)</li> <li>6) 출입국 사실증명서 각 1부(보호자, 학생)</li> <li>7)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li> <li>8)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각 1부(보호자, 학생)</li> <li>9) 해외지사 설치인증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승인(허가)서 사본 1부(국내 금융권 발행)</li> <li>10) 제3국 수학인정서 1부(해당자만 제출)</li> </ul>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서 종합기록표 각 1부(서류접수 시 원서를 출력하여 제출)</li> <li>2) 학력조회동의서 1부(졸업한 고등학교가 외국 소재인 경우만 작성)</li> <li>3)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li> <li>4)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각 1부</li> <li>5) 가족관계증명서 1부(호(제)적등본)</li> <li>6) 출입국 사실증명서 각 1부(보호자, 학생)</li> <li>7)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li> <li>8)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각 1부(보호자, 학생)</li> <li>9)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사실 증빙서류 1부(보호자만 제출)</li> <li>10) 제3국 수학인정서 1부(해당자만 제출)</li> </ul>
유치과학자· 교수요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서 종합기록표 각 1부(서류접수 시 원서를 출력하여 제출)</li> <li>2) 학력조회동의서 1부(졸업한 고등학교가 외국 소재인 경우만 작성)</li> <li>3)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li> <li>4)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각 1부</li> <li>5) 가족관계증명서 1부(호(제)적등본)</li> <li>6) 출입국 사실증명서 각 1부(보호자, 학생)</li> <li>7)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li> <li>8)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각 1부(보호자, 학생)</li> <li>9) 제3국 수학인정서 1부(해당자만 제출)</li> </ul>



지원구분	제출 서류
<b>전 교육과정 이수자 (재외국민)</b>	1) 원서 종합기록표 각 1부(서류접수 시 원서를 출력하여 제출) 2) 학력조회동의서 1부(졸업한 고등학교가 외국 소재인 경우만 작성) 3)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4)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각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호(제)적등본) 6) 출입국 사실증명서 1부(학생) 7)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각 1부(학생)
<b>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인)</b>	1) 입학원서 종합기록표 각 1부(원서접수 시 입력한 후 출력하여 제출) 2) 학력조회동의서 1부(졸업한 고등학교가 외국 소재인 경우만 작성) 3) 초·중학교 성적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각 1부 4)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5)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6)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3급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 3급 이상 입증서류 1부 ※ 한국어능력 3급 이상자 - 인천대학교 한국어학당 4급 과정 수료자, 한국어학당 주관 자체시험 합격자 - 중국, 러시아 등의 재외 동포 중 한국어에 능숙한 자(입증서류 제출 시)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외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생과 부모의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중국 - 호구부, 대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화교협회 호적등본, 미국 - 출생증명서, 일본 - 호적등본 등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증명할 거주국 정부 발행 서류 8) 출입국 사실증명서 1부 9) 본인 여권 사본 1부(국적 및 사진이 있는 부분 복사) 10) 신분증 사본 1부(본인 및 부모 모두, 시민권 사본 등) 11) 외국인등록증 1부(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함. 출입국관리사무소 미등록자 제외) 12) 은행잔고증명서 - 본인 또는 부모 및 배우자 명의의 미국화 20,000달러 상당 또는 그 이상 한국화나 중국화 등 국내·외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 (은행 예금잔고증명서는 원서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
<b>북한이탈주민</b>	1) 원서 1부(원서접수 시 입력한 후 출력하여 제출) 2)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3) 학력증명서 1부(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4)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인천대학교 합격 외국인 신입생은 입학 후 '유학생 의료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 5.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가. 영어, 중국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 받은 한글 또는 영어 번역본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제출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발급기관 또는 입학관리팀에서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야 하고, 합격한 후에는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다. 학력서류(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 외국소재학교에서 발급받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학교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받아 원본으로 제출.
  - 중국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는 중국 교육부 '학위와연구생교육발전중심' ([www.cdgdc.edu.cn](http://www.cdgdc.edu.cn))에서 발급한 학력인증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최종합격자 중 원서 접수 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졸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 운영되는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장 확인(직인)외에 재외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 인증 포함) 등의 별도의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 마. 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기록 폐기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해당 학교 등에서 사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바.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 전형기간 중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아.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자.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원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 6.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서류 준비 요령

### 가. 학력서류 제출 방법

- 1) 가입국의 경우 : 해당국 정부(대한민국의 경우 외교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확인서와 함께 제출
- 2) 미가입국의 경우 :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확인서와 함께 제출

#### ▶ 아포스티유 협약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8

##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 및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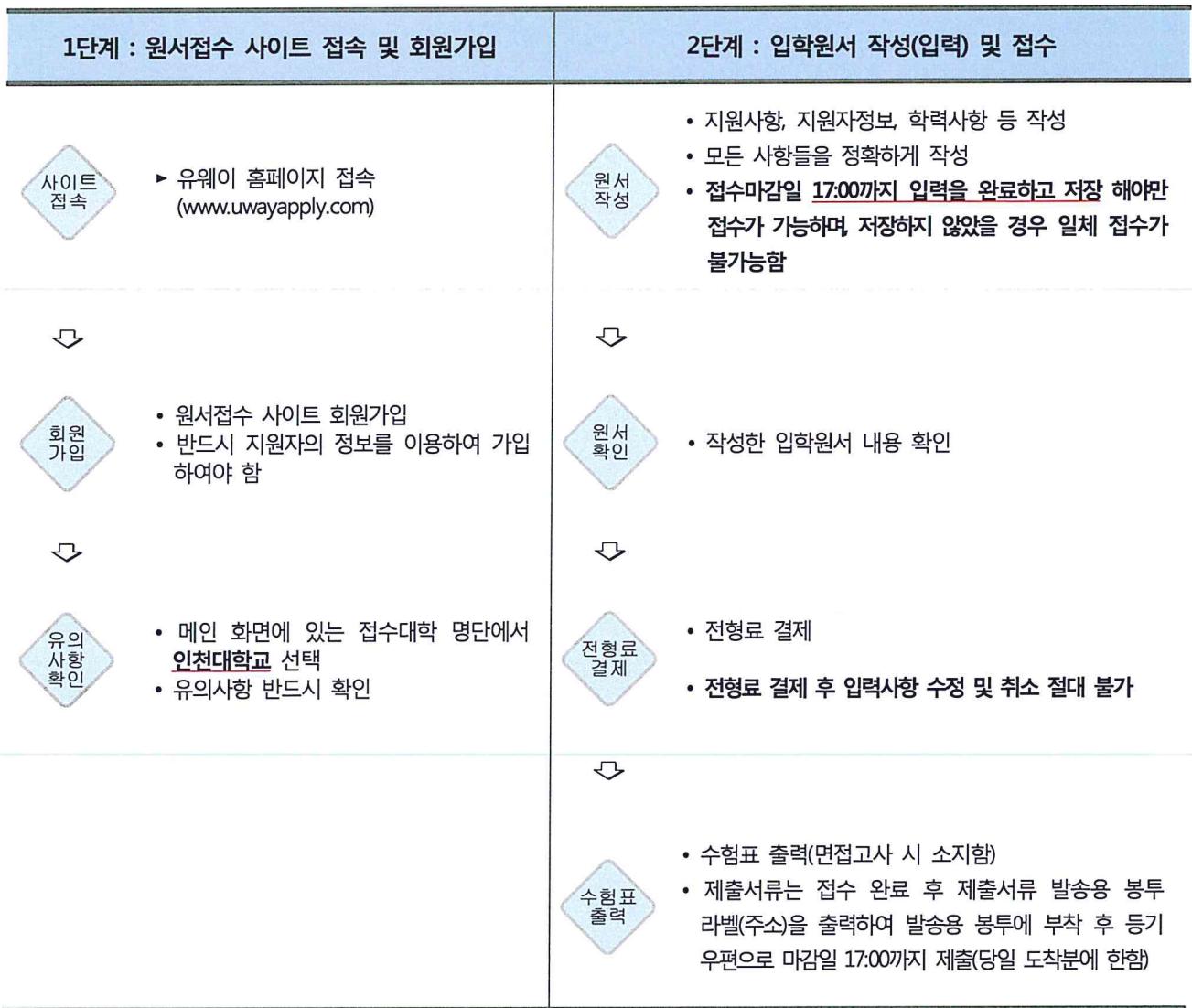
1. 접수기간 : 2017. 7. 01(토) ~ 7. 07(금) 17:00까지

2. 접수사이트 및 연락처

접수사이트	연락처	e-mail
www.uwayapply.com	(전화) 1588-8988 (팩스) 02-533-7724	helpdesk@uway.com

※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실시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접수사이트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3. 접수방법



※ 원서접수 당시 작성(입력)한 모든 사항은 입학전형자료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 지원자 종합기록표는 입학원서 접수 시 정확하게 작성(입력)하여야 함



#### 4. 입학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가. 입학원서 접수가 완료(전형료 결제)된 후에는 입력사항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모집요강을 정확히 숙지하고 전형료 결제 전에 입력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나. 입학원서 접수의 효력은 지정된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하여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 부여와 동시에 발생하며, 수험생은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 당일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여권, 주민(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을 함께 지참하고 응시하여야 한다.
- 다. 입학원서 접수 시 오기 또는 누락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입력)하여야 하고, 작성사항 중 입력착오(누락)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며 우리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라. 수험표 분실 시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재 출력하여야 한다.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의 안내사항을 참조한다.

#### 5. 전형료

##### 가. 전형료 : 60,000원

##### 나. 전형료 반환 사유 및 금액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 본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전형료 전액
- 기타 개인 사유로 미응시한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음

##### 다. 전형료 비례 환불 안내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 ① 반환대상자가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
  - ② 본교 직접 방문
- 반환 방법 중 반환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 안내 및 상담 : 인천대학교 입학관리과(Tel. 032-835-0000)

<서식1> 입학원서

## 인천대학교 입학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 특별전형)

		수험번호		※	
전형 구분	수시모집	①재외국민( ) ②12년 전과정자( ) ③북한이탈주민( )			
지원 자격 구분	재외국민	영주교포( ), 공무원( ), 상사직원( ),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 유치과학자.교수교원( )			
	외국인등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재외국민( ), 외국인( )			
지 원 원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 번호			-	
	학력사항	년      월      일 ~      년      월      일 국가 :      (      )고등학교 (      )년 (수료.졸업)	사      진 (3cm×4cm)		
		년      월      일 ~      년      월      일 국가 :      (      )중등학교 (      )년 (수료.졸업)			
		년      월      일 ~      년      월      일 국가 :      (      )초등학교 (      )년 졸업(예정)			
지원사항	대학	학부(과)	모집단위 코드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	
시험기간중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병역사항	① 미필(제1국민역) ② 면제(제2국민역) ③ 예비역 ④ 여학생 ⑤ 기타(외국인)				
보 호 자	성명	지원자 와의 관계	직업	전화번호	직장 자택
					(      ) -
등록금 반환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 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17년      월      일      전형료 수납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원자 성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접수자 : <input checked="" type="checkbox"/> <b>인천대학교 총장 귀하</b>					

\* 본교 지원자는 휴대폰 및 e-mail을 통한 전형관련 SMS, 모바일 전송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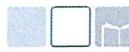
## <서식2> 종합기록표

# 중 학 기 록 표

지원자	지원학과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최종학교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출신 초·중·고·대학교 재학기간(초·중·고·대학교/ 전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모든 학교를 빠짐없이 기재/ 대학교는 학교명, 학교소재지, 재학기간만 기재)																							
구분 학 교 명		학교소재지				재 학 기 간				국내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학기													
		국가명	도시명	시작일 (입학/등록)	종료일 (졸업/총료)	재학년수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년	개월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외국 초·중·고교 재학기간																							
																년	개월						
초등학교(1-6학년)		중학교(7-9학년)				고등학교(10-12학년)								대학교									

◆ 특이사항(외국학교의 학기제도(1년 2학기제 or 1년 4학기제 등), 외국학교로의 입학/전학/편입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기조정사항, 중복수학, 월번, 조기졸업 등 각 교육과정 이수시 발생한 특이사항을 작성)

위 기재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년 월 일 작성자 : (인)



&lt;서식3&gt;외국학력조회동의서

## Letter of Consen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dmissions Team

119 Academy-Ro, Yeonsu-Gu, Incheon, KOREA 22012

TEL : (82+32)835-9281, 9276 FAX : (82+32)858-7141 E-mail : [admission@inu.ac.kr](mailto:admission@inu.ac.kr)**【For Students】**

\*School Name : \_\_\_\_\_ \*e-Mail : \_\_\_\_\_

\*Address : \_\_\_\_\_

\*Zip Code : \_\_\_\_\_ \*Phone : \_\_\_\_\_ FAX : \_\_\_\_\_

**To whom IT may concern :**

\* \_\_\_\_\_ has been admitted to th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for the Spring semester of 2018. The documents he(or she) submitted indicate that he(she) previously attended your school. Yet for the sake of the 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 of th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his(her) documents must be confirmed. Included are his(her) brief personal data along with photocopies of the documents he(she) submitted to us. I would deeply appreciate if you could verify the documents and let us know the results by mail and fax or e-mail above.

I am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Sincerely yours,

Hur Jin, Ph.D. (signature)

Dean of Admissions

## Letter of Agreement

I have applied to th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 Incheon, Korea for the 2018 academic year and have agreed to allow th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o officially request verification.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ask for your full assistance to th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the verification of transcripts.

\*Date of admission(transfer) : \_\_\_\_\_ \*Date of graduation : \_\_\_\_\_

\*Student ID Number : \_\_\_\_\_ \*Date of Birth : \_\_\_\_\_

\*Name : \_\_\_\_\_ (signature) \_\_\_\_\_

**【For School】**

## Verification Report

■ Above records & transcripts : Correct  Incorrect

■ Additional comments :

■ Verifier>Title & Name) \_\_\_\_\_ (Signature) \_\_\_\_\_



## 仁川大学入学管理办公室

地 址 : 韩国仁川市延寿区松岛洞12-1 仁川国立大学 本馆一层  
邮 政 编 码 : 22012 电 话 82+32)835-9276 传 真 (82+32)858-7141  
负 责 人 : Choi Il Yong / E-mail: [admission@inu.ac.kr](mailto:admission@inu.ac.kr)

## 学历调查同意书

\*学生毕业院校 : \_\_\_\_\_

\*学 校 地 址 : \_\_\_\_\_ \*邮 政 编 码 : \_\_\_\_\_

\*电 话 : \_\_\_\_\_ \*电子 邮 件 : \_\_\_\_\_

致关心仁川大学的各位人士

已被仁川大学录取为 2018年春季 学期的新生。该学生提供的材料均出自贵校。根据仁川大学管理条例，我们需要对该生提供的材料作再次确认工作。恳请贵校协助我们完成学生的个人情况确认工作，并且用信件或者电子邮件的形式给予答复。

期待您的答复

此致 感谢

仁川大学 入学处长 許 眞

### 条 约 信 件

我志愿被仁川大学录取为2018学年度学生，并且遵守仁川大学的一切规定。我愿协助仁川大学对我的最终毕业证件作证明工作。

\*高中入学时间 : \_\_\_\_\_ \*高中毕业时间 : \_\_\_\_\_

\*学位证号码 : \_\_\_\_\_

\*姓 名 : \_\_\_\_\_ \*签 名 : \_\_\_\_\_

\*出生年月日 : \_\_\_\_\_

### 毕 业 学 校 的 证 明

以上的证明是否属实：正确 \_\_\_\_\_ 不正确 \_\_\_\_\_

附言 : \_\_\_\_\_

签名(以及添加标题) : \_\_\_\_\_

\*被录取者需要根据最终毕业学校的毕业证明完成此表格的填写，\*标志的部分希望用毕业学校所在国家的语言正确填写